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21.자 취득세 590,777,210원, 농어촌특별세 59,077,730원, 등록세 236,310,890원, 지방교육세 47,262,1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2. 10.자 재산세 156,441,040원, 도시계획세 17,174,900원, 공동시설세 12,345,630원, 지방교육세 31,288,190원, 지역자원시설세 25,001,100원, 도시지역분 45,2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5.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redacted]외 4필지상에 건물 12,261.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8. 5. 20.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지상 4층 772.82㎡ 및 해당 공용면적 352.5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1,136.5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호가 정한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2013. 6. 21.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1,029,215,55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420원, 등록세 315,601,340원, 지방교육세 82,337,220원 합계 1,626,160,5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기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기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심판결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취득세 590,777,210원, 농어촌특별세 59,077,730원, 등록세 236,310,890원, 지방교육세 47,262,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10. 별지1 '감면 재산세 등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감면받은 재산세 156,441,040원, 도시계획세 17,174,900원, 공동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설세 12,345,630원, 지방교육세 31,288,190원, 지역자원시설세 25,001,100원, 도시지역분 45,241,9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12. 10.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이를 원고 및 원고의 관계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로 사용한 것은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취득세 등 추징요건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평생교육시설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시설로 전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시트콤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고 주말에 임직원 예식장 용도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redacted]주식회사는 2003년 5월경 [redacted] 주식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redacted]에 이노베이션센터 1개동을 신축하여 [redacted]'을 건립하였고, 그 후 인근 건물 2개동을 추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매입하여 러닝센터와 글로벌센터로 리모델링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 [redacted]주식회사로부터 분할 · 설립되면서 위 [redacte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4. 25. 리더십센터 1개동인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현재 [redacted]구성 건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물명	취득일	소재지
이노베이션센터	2003. 5.	서울[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101-1
러닝센터	2004. 12.	서울[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101-5
글로벌센터	2005. 8.	서울[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101-10
리더십센터	2008. 4.	서울[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102

3) 한편, [redacted] 주식회사는 2004년 9월경 [redacted]를 [redacted]시 [redacted]교육청에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2006. 4. 10.에는 러닝센터와 글로벌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추가하였다.

4) 원고는 2008. 9. 3.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평생교육시설에 추가하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현장실사를 거쳐 2008. 12. 1. 변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5)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98,790명 가량이 교육과정을 수강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이었는데,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크게 승진자 및 신입사원 교육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직무교육과정과 어학 및 컴퓨터 활용 교육을 포함한 임직원 개인역량 개발과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개인역량 개발과정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임직원 2,888명이 51종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6)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원고 회사 임직원들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있었는데, 2011. 2. 26.부터 2013. 9. 28.까지 총 23회에 걸쳐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외계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소외계층아동 보호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아동 지도교사교육 프로그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아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7)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시트콤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는 임직원들의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 방법 ·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위 평생교육법 규정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주로 원고 회사 임직원의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부분을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인 원고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평생교육법의 규정 내용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를 고려하면,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특히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통상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특성이나 시간, 장소적인 제한 등을 이유로 교육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결국은 선정된 특정인이 교육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평생교육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인 불특정 다수를 교육 가능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③ 평생교육법 제32조가 정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상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기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등의 종업원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형태의 경우 그와 같은 교육 대상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특별히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사내 종업원 등 특정인을 교육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와 같이 법령에서 교육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인 이상, 교육대상을 임의로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④ 원고 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이라기 보다는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개인역량 개발과정의 경우,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고는 그 교육내용이 어학 및 컴퓨터 활용 교육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이 추후 퇴사하더라도 임직원이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한 교육 내용이 결국 지역사회 주민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교육 대상이 회사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목적이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있는 이상 평생교육법이 예정한 평생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조례 제7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 비추어 보면, 위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원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 사회 주민(소외계층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주로는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 서류로 제출한 운영규칙 제6조는 '본 시설의 입학자격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첨부된 교육과정편성표에도 수강자격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다. 위와 같는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원고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별지1

감면 재산세 등 내역

(단위:원)

고지서	과세대상	세목	과세금액
갑제7-1호증	중구 필동2가 102 (2010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2,968,010
		도시계획세	7,261,920
		공동시설세	12,345,630
		지방교육세	2,593,600
갑제7-2호증	중구 필동2가 102 (2011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3,041,020
		도시지역분[4]	7,302,970
		지역자원시설세[5]	12,469,180
		지방교육세	2,608,200
갑제7-3호증	중구 필동2가 102 (2012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3,106,350
		도시지역분	7,339,560
		지역자원시설세	12,531,920
		지방교육세	2,621,270
갑제7-4호증	2010년 재산세 토지분 누락분	재산세	28,703,660
		도시계획세	9,912,980
		지방교육세	5,740,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갑제7-5호증	2011년 재산세 토지분 누락분	재산세	28,896,740
		도시지역분	9,979,650
		지방교육세	5,779,340
갑제7-6호증	2012년 재산세 토지분 누락분	재산세	29,926,860
		도시지역분	10,335,270
		지방교육세	5,985,370
갑제7-7호증	20013년 재산세 토지분 누락분	재산세	14,750,340
		도시지역분	5,017,830
		지방교육세	2,950,070
갑제7-8호증	2014년 재산세 토지분 누락분	재산세	15,048,060
		도시지역분	5,266,640
		지방교육세	3,009,610
합계		**재산세**	**141,392,980**
		도시계획세	**17,174,900**
		공동시설세	**12,345,630**
		지방교육세	**31,288,190**
		지역자원시설세	**25,001,100**
		도시지역분	**45,241,9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별지2

관계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2

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끝.